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3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3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3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

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5까지 및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423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5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5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정부는 전기·가스·열 에너지 요금에 관한 통합적·합리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이하 “에너지요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3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③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요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10조의3(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에너지요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의 인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 중 요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10조의4(에너지요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현행	개정안
	<u>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7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8명을 추천한다.</u> <u>1.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2.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u> <u>3.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u> <u>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 <u>④ 그 밖에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조의5(위원장) ① 위원장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u>

현행	개정안
	<u>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u>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u> <u>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u> <u>제10조의6(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u> <u>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u> <u>제10조의7(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u> <u>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u> <u>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u>

현행	개정안
	<u>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3. <u>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u> 4. <u>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u> ② <u>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u> <u>제10조의8(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 ② <u>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u> ③ <u>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제10조의9(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 1. <u>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u> 2. <u>「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3. <u>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u>

현행	개정안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10(회의) ①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에너지요금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행	개정안
	<u>경우</u> <u>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u> <u>⑤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u>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u> <u>②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u> <u>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u>

현행	개정안
	<u>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u> <u>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u> <u>제10조의12(전문위원회) ① 에너지요금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조의13(사무처의 설치) ①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에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u> <u>②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조의14(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조의15(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u>

현행	개정안
<신설>	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벌칙) ① 제10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열에 대하여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전기·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장규칙 인허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기사업 허가, 전기요금(공급약관), 시장운영규칙 인가 등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허가¹⁾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의 경우에도 열 생산시설 설치 및 사업의 허가, 요금을 포함한 공급규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고 있고, 요금의 상한을 고시로 지정²⁾하고 있음.

가스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의 허가,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 공급규정의 승인³⁾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⁴⁾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인 상황에서 최근 러-우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2024년(잠정)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7%임

(출처: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 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210.do)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전기·가스·열 요금 결정을 독립적 합의제 기구로 통합함으로써, 요금 정책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를 조항별로 살펴보면 안 제10조의2는 전기·가스·열 에너지 요금에 관한 통합적·합리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요금 관련 사무를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며,

안 제10조의3은 개별법에 따른 요금 인가·승인 사항을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10조의4는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안 제10조의5는 위원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의6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의7은 위원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8은 위원의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의9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안 제10조의10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11은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적·기피·회피를 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12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의13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의 설치를 규정하며, 안 제10조의14는 위원회 운영 관련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의15는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및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25조의2는 청렴 및 비밀 유지 의무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조항별 주요내용]

조항	제목	주요 내용
제10조의2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전기·가스·열 요금에 대한 통합적·독립적 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요금결정 독립성 보장
제10조의3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기요금 인가, 도시가스 요금 승인, 집단에너지 요금 관련 사항 등 에너지요금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규정
제10조의4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구성,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 교섭단체별 추천 비율 명시
제10조의5	위원장	위원회 대표·회의 주재, 국회 출석·보고 의무, 국무회의 출석 및 총리에게 의안 제출건의 가능

조항	제목	주요 내용
제10조의6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결원 발생 시 후임자 임기 새로 개시
제10조의7	위원의 신분보장	법률상 사유 외 면직·해촉 금지,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제10조의8	겸직금지 등	상임위원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원 정치활동 금지, 비공무원 위원도 형벌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의9	결격사유	비국민,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탄핵 파면자, 정당 당원은 위원 불가
제10조의10	회의	회의 소집 요건, 의결 정족수 규정, 회의록 작성·공개 원칙, 예외적 비공개 사유 규정
제10조의1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 규정
제10조의12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가능,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제10조의13	사무처의 설치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처 설치 근거
제10조의14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10조의15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금품 수수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5조의2	벌칙	금품 수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 규제기관 설치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원별 시장 여건이 상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통합 규제기관을 일시

에 도입하기보다는 각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기요금 등 민감한 가격결정 기능만을 별도의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 역시 규제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국내 가스산업 구조, 에너지원별 산업 특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⁵⁾임.

둘째, 행정안전부는 현재 부처별 기능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요금 체계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 신설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행정효율성 및 조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⁶⁾을 제출한바,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에너지요금위원회 위원 15인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사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 사례⁷⁾에 비추어 볼 때,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

5) 에너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서는 에너지 산업이 개방되어 자유화된 시장을 규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특징이 있으나 국내 가스산업은 도·소매 시장이 독점화된 구조로 해외사례와 차이가 있고, 가스요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 법령체계에서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업무 수행 시 얻는 실익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6) 기능 및 인력 중복, 기존 각 소관 부처의 기능 약화 등이 우려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업무량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가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위원 7명 중 5명에 대해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부의 인사권과의 관계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전기위원회 위원의 임기, 소관사무의 승계, 규제기관 소속 변경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이관, 전기위원회의 행위 승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대로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수적인바, 동 개정안은 김소희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심사경과를 반영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문 의 처
02)6788-5536